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92 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김소희·김위상·조경태

김상훈 · 김예지 · 안상훈

김성원 • 박덕흠 • 유용원

성일종 · 서범수 · 김장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,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. 또한,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 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.

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,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2(기금의 평가)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2조의2(기금의 평가) 기획재정
	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
	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
	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
	<u>다.</u>